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과정과 민주주의 : 비교정치학의 시각에서*

양동훈(경성대 정치외교학과)**

- I. 서론
- II. 인권유산 정리 과정
- III.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 과정
- IV. 결론

I. 서론

포르투갈에서 1974년 “제3 민주화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이 시작되고 30년 이상이 지났다. 세계의 30여개 비민주국가들이 다소의 시차와 질적인 상이성이 있지만 소위 “신민주체제”-또는 “반(反)자유민주체제”, “위임민주체제”-를 경험하고 있다.¹⁾ 이 세기적이

* 경성대학교 학술지원(2006) 연구과제임.

** Dong-Hoon Yang(Kyung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hyang@star.ks.ac.kr), “Settling the Human Rights Legacy and Democracy in South America: A View of Comparative Politics”. 논문 심사위원의 진지한 비평과 제언에 감사한다.

1) 신민주체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논의한 학자들은 “선거”(electoral), “위임” (delegative), 반(反)자유(illiberal), 후기권위주의적(post-authoritarian) 민주체제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선거민주체제는 신민주체제의 자유 공명선거과 그에 따른 정치권리의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Diamond 1999). 위임민주체제는 신민주체제의 정치권력의 집중과 독단적 행사에 주목하고 있다(O'Donnell, 1994). 반(反)자유민주체제는 무엇보다도 신민주체제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mith 2005, 264-265). 후기권위주의 민주체제는 신민주체제의 권위주의 유산과 그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한다(Hite & Morlino 2004; Cesarini & Hite 2004).

고 세계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다수 정치학자들, 특히 비교정치학자들은 그동안 민주화를 원인,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분석 논의하고 연구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는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관련 학자들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다른 시각에서 다양하게 개념화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규범, 규칙이 제도적으로 정향적으로 실현 실천되고 심화 완성되는 과정에 주목해 왔다.

반면에 민주주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권위주의 유산과 그 정리, 특히 권위주의 인권탄압 유산(인권유산) 정리 -“과거청산”- 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미흡하다. 근래 세사리나와 하이트(Cesarina & Hite 2004, 329)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논의하는 비교학자들이 권위주의 유산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내영과 박은홍(2004, 15)은 국내학계에서 과거청산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연구가 희소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주체제에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민주적 가치 규범 규칙의 실현과 실천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권위주의 유산의 정리 또는 청산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신민주체제에서 과거의 권위주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민주적 개혁을 실천하는 양면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유산의 정리가 전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화 또는 공고화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경험적으로 사상누각과 같이 부실하다.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민주적 개혁과 함께 권위주의 유산과 그 정리과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제3 민주화물결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을 개념적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각 국가의 인권유산 정리과정 -정책, 그 원인과 조건- 은 무엇인가? 또한 인권유산 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과 조건은 무엇인가? 왜 각 국가들은 다른 또는 유사한 정리과정을 추구하였는가? 인권유산 정리정책이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비교 사례국가는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이다. 이들 국가는 비교방법론적으로 최대유사체계(most-similar systems) 국가들이다. 모두 제3 민주화물결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로서 고도의 근대화단계에서 반동적(reactinary)이고 배제적(exclusionary)인 억압적 군부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Smith 2005, 103). 그리고 군부체제 붕괴 후에 모두 거의 20여 년 동안 신민주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 국가는 신민주체제에서 다른 인권유산 정리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과정은 민주주의 체제화(regimization) 또는 공고화(consolid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II. 인권유산 정리과정

II.1. 인권유산 정리정책³⁾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은 첫째 과거사이자 현안이다. 인권탄압 행위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와 영향은 현재의 정치적 선택과 과정, 미래의 변화를 제약한다. 둘째 인권유산은 동시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인권유산이 권위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억압행위의 결과였다면 현재는 신민주체제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의 상징이다. 셋째 인권유산은 정치적 정통성의 문제이다. 권위주의체제에서 인권탄압은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폭력과 정치탄압에 의존하면서 발생

2) 민주주의 체제화(regimization)는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 체제화는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부분일 수도 있다. 즉 민주주의 공고화를 선거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심화로 개념화하는 경우이다(Schedler 1998, 98-100).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화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아니다. 민주주의 체제화는 신민주체제의 권위주의적, 반(反)자유주의적 속성과 세력을 축소 약화시키는 한편 동시에 민주적, 자유주의적 속성과 세력을 확대 강화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권위주의 유산을 정리하는 한편 민주개혁을 통하여 시민권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적 질서를 수립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다.

3) 양동훈(2007),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유산 정리와 민주주의: 신민주체제의 관점에서”.

하였다. 신민주체제에서는 인권유산은 체제정통성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넷째로 인권유산은 권위주의체제에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억압한 결과이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소급적 정의”(retroactive justice)를 통하여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권위주의체제에서 인권탄압은 일방적인 인권침해와 인권피해의 양면적 행위이다. 신민주체제에서는 인권침해자의 책임문제와 인권희생자의 손실회복과 피해보상의 문제이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은 인권침해와 인권피해의 문제이고 그 정리정책은 과거의 인권침해와 인권피해에 대한 국가(정부)의 접근방법과 전략이다.⁴⁾ 인권유산 정리정책에는 “기억”(remember) - 또는 진실규명 - 과 처벌(sanction)의 관점에서 “망각”(forgetting), “용서”(forgiving) 또는 관용, “기소”(prosecuting), “보복”(revenge)의 대안적 정책이 있다.⁵⁾ 이 정리정책들은 신민주체제에서 민주적 개혁세력이 승자의 입장에서 조합적으로 선택 추구할 수 있는 대안들이다. 그러나 군부를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의 실력과 영향력이 신민주체제의 생존을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정책이 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은폐(covering) 정리정책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보복은 일방적인 양갈음 행위로서 또 다른 동기의 인권유린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는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은 기본적으로

4)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유산 정리는 국내에서는 “과거(사) 청산”으로 해외에서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로 개념화하여 논의하였다. 이행기 정의는 포괄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망각, 용서, 기소, 보복 정책과 인권피해에 대한 회복, 보상 정책을 포함한다. 반면에 협의적으로 이행기정의는 인권침해에 대한 기소, 재판, 처벌하는 결정과 희생자의 인정, 명예회복, 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사라니(Cesarini 2004, 163)는 이행기 정의는 “소급적 정의”(retroactive justice)로서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도 포함한다.

5) 과거정리 전략(Forsberg 2003, 70: Table 4.1):

		처벌(sanction)	
		O	X
기억 (remember)	O	기소(prosecuting)	용서(forgiving)
	X	보복(revenge)	망각(forgetting)

로 망각, 관용, 기소, 무위이다. 첫째 망각 정리정책은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대한 기억 또는 진실규명과 처벌 없이 인권유산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스페인과 같이 민주적 개혁세력과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이 합의적으로 과거를 매장하고 민주개혁을 추구하는 방법이다(Forsberg 2003, 71). 망각정책은 인권유산 정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 사회적 분열이 신민주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남아프리카와 같이 관용 정리정책은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의 진실고백과 반성 또는 사과를 전제로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이다. 이 관용정책은 특별 사면 또는 감형 정책도 포함한다. 또한 관용정책은 용서와 화해에 동의한 인권희생자를 위한 손실회복(reparations)과 피해보상(compensations)도 포함한다.⁶⁾

셋째 은폐 정리정책은 신민주체제에서 국가가 인권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와 그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행위이다. 신민주체제가 근원적으로 군부를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보수 집단과 세력의 선의와 동의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다. 권위주의 인권침해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거나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히려고 할 경우에 신민주체제의 생존과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적 개혁세력은 결과적으로 정의실현보다는 우선적으로 신민주체제 유지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기소 정리정책은 사법적 절차와 수단을 통하여 인권유산을 정리하려는 방법이다. 인권침해 관련자의 과거 행위를 증거로서 규명하고 사법적으로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하려는, 즉 소급적(retroactive)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책이다. 망각이나 관용 정책은 타협과 화해를 강조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기소정책은 정의실현을 우선하는,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기소정책은 관용정책과 함께 실시될 수도 있다. 관용정책에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은 가해자를 기소할 수

6) 크릿츠(Kritz 1995a, 487-591)는 권위주의 인권탄압 희생자의 대우와 보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도 있다. 또한 기소정책으로 가해자를 사법 처리한 후에 감형 또는 사면할 수도 있다.

기소정책이 실현되려면 우선 과거 인권침해 행위와 그 가해자에 대한 사실적 증거가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침해 관련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위주의 보수세력은 불리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거나 증인을 압력과 위협을 통하여 침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민주체제에서는 법치의 기반인 사법부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다양하고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증거와 증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기소 처벌하는 활동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신민주체제가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장기간 지원할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희생자들의 손실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자원부담도 추가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인권유산의 정리정책은 인권침해를 범한 가해자에만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인권피해, 즉 인권침해의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손실회복과 피해보상, 그리고 인권제도 개선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신민주정부는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진실을 규명하여 그 희생자들과 가족의 피해와 손실을 확인 인정하고 그들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키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도 한다(Cesarini 2004, 163). 이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치, 규범, 규칙에 근거하여 새롭게 재구성된 국가가 과거 국가폭력과 정치탄압을 반성하고 그에 희생된 인권과 시민권을 소급적으로 인정하여 회복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인권과 시민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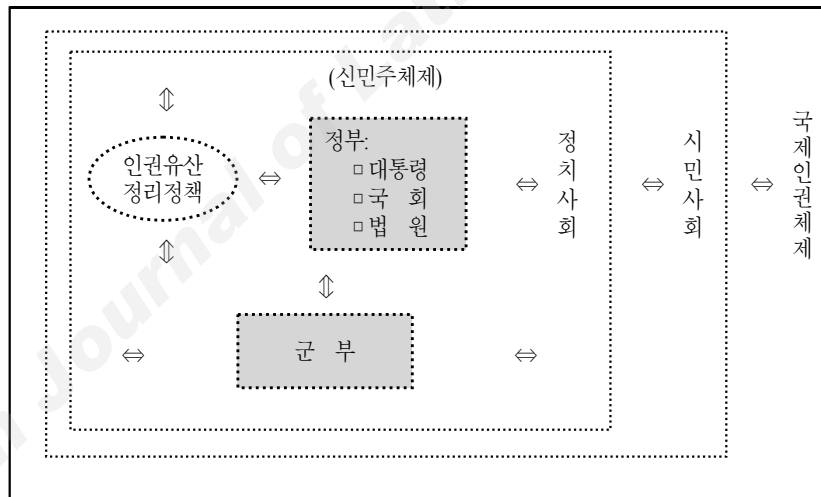
II.2. 인권정리 정책 요건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조건은 네 가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도 있다: 1)권

위주의체제 유산; 2)민주화 이행과정; 3)국제인권체제 압력; 4)신민주체제 인권정치.⁷⁾

첫째 권위주의체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1)인권 탄압 수준-범위와 강도; (2)경제정책 성과. 권위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억압체제이다. 권위주의 통치세력은 체제와 리더십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폭력과 정치탄압을 통하여 물리적으로 인권과 시민권을 계획적으로 억압한다. 군과 경찰의 안보집단이 조직적으로 반체제 반정부에 연루된 개인이나 집단을 체포, 구금, 고문, 학대, 학살 등을 감행한다. 그 희생자가 전체 인구의 권위주의체제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다수이고 그 출신배경이 다양할수록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에 대하여 정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기소 정리정책이 추진될 개연성이 커진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 또는 은폐 정리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림 1>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정책: 개념화



7) 피언-버어린(David Pion-Berlin, 1995)은 인권정책의 6가지 원인을 논의하고 있다: (1) 인권침해 유산, (2)엘리트(리더십) 선호, (3)군부와 정부의 세력균형, (4) 조직화된 이익집단 압력, (5)전략적 계산, (6)국가사회의 파급효과.

한편 권위주의체제에서 경제발전, 정치안정, 경제발전 등 가시적인 정책성고가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에 대한 정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다. 권위주의체제는 정책적 성과를 통하여 그 수혜자 집단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여 체제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통치세력은 가시적인 정책성고를 통하여 인권탄압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

신민주체제에서 무엇보다도 인권탄압과 정책성과의 상호관계의 측면에서 이익과 비용으로 권위주의체제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평가는 정책성고가 크고 인권탄압의 강도가 낮을수록 우호적 또는 긍정적일 것이다. 그러면 인권유산 정리에 대한 압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역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책성고가 적고 인권탄압의 강도가 높으면 체제평가는 적대적 또는 부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인권유산 정리-특히 기소 정리정책-에 대한 압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주화 이행과정이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에 영향을 준다. 헌팅턴(Huntington 1991, 121-163)은 민주화 이행과정을 정치세력의 균형관계에 따라서 변환(transformation), 대체(replacement), 변위(transplacement)로 구분하였다. 변환 이행과정에서는 군부를 포함하는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이 민주화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정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대체 이행과정에서는 민주적 개혁세력이 민주화과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급진적인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권위주의적 보수세력의 반대와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변위 이행과정에서는 권위주의적 보수세력과 민주적 개혁세력의 균형관계에 따라서 인권유산이 다소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셋째 국제인권체제-세계적, 지역적-도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결정에 간접적이지만 포괄적인 영향력과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정 국가가

인권유산 정리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선언과 국제법에 근거한 세계적, 지역적 인권규범, 국제기구와 주변국가의 인권정책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반하는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한 정리정책은 국내외의 인권 집단과 세력의 비판과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리정책의 지속성과 신민주체제의 공고성이 위협받게 되고 신민주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도 약화될 수 있다.

넷째 신민주체제의 제도적 특성과 관계, 사회적 압력이 인권유산 정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1)정부; (2)시민사회; (3)군부. 신민주체제에서 정부-대통령, 의회, 법원-는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결정자이고 집행자이다. 대통령은 도덕적 신념(moral imperative)과 정치적 분별(political prudence)의 갈등 속에서 인권유산 문제와 정책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논의 합의 결정된 정리정책을 집행하기도 한다. 한편 의회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리정책에 대체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의회의 협력과 지지는 여당이 의회를 주도할 경우에 더욱 강화된다. 반면에 법원은 이념적 성격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의 정리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 또는 침묵한다. 대법원이 대통령 정리정책과 의회 결의에 대하여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인권유산 정리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기소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정한다.

군부는 신민주체제에서 물리적 실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권위주의 인권탄압 유산은 군부가 권위주의체제의 통치집단으로 직접 주도하고 참여한 결과이다. 따라서 군부는 자신의 과거 인권탄압을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정당화한다. 군부는 스스로 포고한 또는 강요한 사면법이나 정치협약을 통하여 인권유산에 대한 책임을 은폐 또는 회피하려고 한다. 군부는 특히 기소 정리정책에 민감하게 반대하고 저항한다. 그러므로 기소정책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실천되려면 민군관계에서 민우위(civilian supremacy)의 원칙이 우선 제도적

으로 정립돼야 한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이 중요하다.⁸⁾ 문제는 시민사회의 주요 집단과 세력이 인권유산에 대하여 역사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가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이 조건에서 일관된 정리정책의 추구가 어려워진다. 또한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 정리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도 중요하다. 정리정책에 대한 시민 절대 다수의 동의는 그 정책적 정당성과 지속성, 일관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동의가 미흡한 경우에는 정책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리정책은 유동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망각, 관용, 기소, 은폐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정 국가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권위주의체제, 민주화 이행과정, 국제인권체제, 신민주체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각 차원의 요소와 조건들이 국가 특성적으로 조합되어서 결과적으로 정리정책이 결정된다. 특정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결정자이고 집행자이다. 정부에서 대통령, 의회, 법원이 주요 상호 관련 행위자들이다. 정부는 권위주의체제 유산, 민주화 이행과정, 국제적 인권환경의 조건에서 군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근거하여 인권유산 정리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군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태도와 역할, 관계가 변화하는 조건에서 정부의 리더십, 의회 세력분포, 법원 리더십 등이 변화하면 인권유산 정리정책도 변화될 개연성도 커진다.

8)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자치조직의 집단, 운동, 개인들”의 구성체이다(Linz & Stepan 1996, 7).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과 동의는 주요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투표나 여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I. 남미의 인권유산 정리과정

III.1. 권위주의체제 유산

1) 인권탄압 수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군부권 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모든 국가의 군부체제는 특성적으로 반동적이고 배제적인 억압체제였다. 정치탄압의 대상은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사회적 계층과 직업군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정치탄압의 강도(intensity)-군부체제 존속기간과 총인구 비례-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⁹⁾

브라질의 고문보고서(“Brasil: Nunca Mais”)에 의하면 브라질 군부체제에서 15년(1964-1979) 동안에 공식적으로 125명이 실종되었다. 1,843명의 정치범들은 283가지 고문방법과 242곳의 비밀고문실, 444명의 고문자를 확인하였다(Dassin 1986, x). 아르헨티나의 인권보고서(“Nunca Más”)는 군부체제(1976- 1983)에서 7년 동안 “과괴세력”에 대한 “더러운 전쟁”(dirty war)으로 공식적으로 9,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칠레 군부체제(1973-1988)에서는 약 3,000여명의 반체제, 반정부 인사가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우루과이 군부체제(1973-1984)에서는 정치범 수가 전체 인구에 대비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며 “라틴아메리카의 고문실”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¹⁰⁾ 시민인권단체 “봉사, 평화, 정의”는 인권보고서(Uruguay: Nunca Más) 부록에서 군부체제에서 사망한 150명, 실종된 169명을 확인하고 있다(Servicio Paz y Justicia 1989, 337-347).

2) 경제정책 성과: 브라질과 칠레 군부체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군부체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¹¹⁾

9) 남미의 인권보고서 참조: Toture in Brazil: A Report by the Archdiocese of São Paulo(1986); Nunca Más: The Report of The Argentine 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ed(1984); Report of the Chilean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1993); Uruguay Nunca Más: Human Rights Violations, 1972- 1985(1982).

10) [http://www.freedomhouse.org/ Freedom in the World - Uruguay\(2002\).](http://www.freedomhouse.org/Freedom in the World - Uruguay(2002).)

브라질 군부체제는 연평균 6.6%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1968년과 1973년 사이에는 연평균 10%의 고도 경제성장-소위 “브라질 경제기적”-을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도 진정되었고 국제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이젤(Ernesto Geisel) 군사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치자유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정치자유화 시기에는 경제상황이 다소 악화되었다. 민주화이행(1985) 전 5년 동안 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3.1%, 인플레는 75.5%, 외채율(1984)은 39.6%이었다.¹²⁾

칠레 군부체제는 광범위한 민영화정책을 통하여 국가개입을 대폭 축소하고 자유경제체제를 실현하였다. 국내외의 개인투자가 증가하고 인플레도 연평균 1000%에서 10% 대로 하락하였으며 국내 총생산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4년 후부터 연평균 5%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1989년에는 10%에 이르렀다. 1989년에는 개인당 국내총생산이 1981년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하였다. 민주화 이행(1990) 전 5년 동안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3.9%로 증가하였고 인플레는 23.5%에 머물렀다. 외채율은 1989년 18.5%였다.

반면에 아르헨티나 군부체제는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였으나 성장보다는 금융투기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군부체제에서 외채가 증가하였고 국가경제는 해외자본이나 국제금융기구에 의하여 통제되었다. 외채상황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198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었고 재정적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말비나스(Malvinas)전쟁 후에는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5.2% 감소하였고 인플레는 200% 이상으로 높아지고 외채도 더욱 증가하여 1982년에는 외채비율은 53.6%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행(1983) 전 5년 동안 국내총생산 성장비율은 연평균 2.4%, 인플레는 211.2%로 경제위기가

11) 경제지수의 통계자료 참조: (1) Haggard & Kaufman(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2)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1992),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3) Calvert, ed.(1991), *Political and Economic Encyclopedia of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12) 외채율은 총수출액의 이자상환액의 비율(*Interest Payments Due/Exports of Goods and Non-Factor Services*).

심화되었다.

우루과이 군부체제도 아르헨티나의 경우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거의 1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도 심화시켰다. 외채율은 1984년 34.8%에 이르렀다. 1985년에는 외채가 급증하여 외채상환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고 인플레이션도 83%로 증가하였다. 민주화 이행(1985)전 5년 동안 연평균 국내총생산 성장률 2.0%, 인플레이션 45.6%였다.

III.2. 민주화 이행과정

브라질과 칠레의 군부체제는 군주도의 변환(transformation) 과정을 통하여 신민주체제로 이행되었다. 아르헨티나는 군부체제가 급격하게 와해되고 문민세력이 주도하는 대체(replacement) 과정으로 신민주체제가 수립되었다. 우루과이는 군부와 민간 정치지도자가 민주협약을 통하여 변위(transplacement) 과정으로 민주적 체제변화가 실현되었다.

브라질 군부체제에서 경제성장, 정치안정, 사회질서 등의 정책적 성과를 이룩한 군사정부는 한편으로 체제정통성을 더욱 높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 내의 안보세력을 견제하여 군제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정치자유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군사정부는 군부 강경파를 정치적으로 소외시키면서 정치자유화 과정을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군부체제의 민간화와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군사정부는 1979년 전의 보안세력의 활동에 대한 조사와 보복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사면법을 포고하였다. 민간 정치인들은 군부의 사면법을 수용하였다.

칠레 군부체제에서도 군사정부는 스스로 마련한 정치일정에 따라서 민주화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피노체트(Augusto Pinochet) 대통령과 군사평의회는 1980년 민주화 일정을 포함하는 신헌법을 제안하고 불공정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정하였다. 신헌법에 따라서 군사평의회가 추천하는 대통령후보, 즉 피노체트의 신임을 묻는 국

민투표가 1988년 실시되었다. 피노체트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지지를 받으면 1997년까지 대통령으로서 연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부체제가 지속되는 것이었다. 칠레 정당들은 정당연합(Concertación)을 구성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반대투표 운동을 전개하였다. 투표자의 거의 55 퍼센트가 피노체트의 연임을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주 대선과 총선이 1989년 말에 실시하게 되었고 문민정부가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노체트와 군부가 헌법에 스스로 보장한 그들의 정치적 특권과 영향력은 피노체트가 인권탄압 관련 혐의로 해외에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 조건에서 칠레의 인권유산 정리는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¹³⁾

아르헨티나 군부체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책적으로 실패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시민 다수는 국가폭력과 정치탄압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아르헨티나 사회로부터 고립된 군부는 말비나스 전쟁을 통하여 체제유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전쟁패배는 군부조직을 급격하게 와해시키고 군부체제를 급진적으로 붕괴시켰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개혁세력이 민주화과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1982년 민간 정치인들에게 권력이양을 위한 정치협약과 그 정책 지침을 제안 발표하였다. 군부는 협약에서 인권탄압을 포함하는 군부체제의 실정에 대하여 신민주정부가 조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의회는 군부가 정권이양 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협약과 정책지침을 폐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대법원도 의회 결의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우루과이 군부체제도 칠레군부와 같이 민주화일정을 마련하고 1980년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칠레의 경우와 달리 국민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민주화과정을 주도할 명분을 상실한 군부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민주화요구에 직면하여 주요 정치지도자들과 정치협약(1984)-소위

13) 군사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사면법도 그 때까지 유효하였다. 피노체트 군사정부는 칠레 시민의 “재통합을 위하여” 계엄시기(1973/9~1978/3)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통령포고령(Decree Law No. 2191, 1978)을 선포하였다.

“해군클럽협정”(Navy Club Pact)-을 통하여 제한적 조건에서 기초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민당 지도자와 광역전선(Broad Front) 지도자, 공산당 등의 선거참여를 금지하는 제한선거 실시를 합의하였다. 이 협정-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에서 민간 정치지도자들은 신민주체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군부체제 인권탄압 관련 보안군을 처벌하지 않을 것 약속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이 민간법정에 인권침해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III.3. 국제인권체제 압력

세계인권체제는 기본적으로 국제연합(UN)의 인권선언과 협약, 관련 인권 조직과 기구들에 근거하고 있다. 주요 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과 시민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이다. 주요 인권기구는 인권평의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가 있다.¹⁴⁾

또한 국제연합은 특정 유형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협약과 조직, 기금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84년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비열한 조치나 처벌 반대 협정”(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체결하고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를 조직하여 당사국들의 고문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문제의 개선을 권고도 하고 있다. 또한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세계의 비정부 인권단체들을 돕고 있기도 하다.

14) 인권평의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2006년에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ttee)를 개명-는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세계인권체제의 심장부이다. 회원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 인권평의회는 1946년부터 국제인권규범을 논의하고 타협하는 정치적 토론장이다. 개인들이 제기한 심각한 체계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시민권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18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협약 가입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인권보고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한편 세계 비정부 인권단체 중에서 특히 1961에 설립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국가들의 인권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조사와 인권활동을 통하여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인권침해 국가나 단체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Donnelly 2003, 127-135).

국제 인권과 선정(Good Government)단체들은 브라질의 까르도수(Fernando Henrique Cardoso) 대통령을 방문하여 인권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제인권감시단체(Human Rights Watch)는 인권정책의 실행에 소극적인 까르도수에게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Human Rights Watch, 13-5-1999).

세계인권체제가 국가의 인권정책의 포괄적인 환경인 반면에 국제지역인권체제는 지역 국가의 인권정책 결정에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메리카대륙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미주지역 인권체제 수립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반면에 그 인권체제의 개입과 영향에 구속되기도 한다. 미주지역 인권체제는 35개 회원국의 미주국가기구(OAS,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하는 미주 21개국 이 1948년 미주국가기구를 설립하였고 그들은 창립총회에서 “인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The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을 채택하였다.¹⁵⁾

미주 인권협정(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1969년 체결되고 1978년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개인적, 법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재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해야 하는 인권을 규정하고 미주 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인권재판소가 1979년 설립되었다. 미주국가기구는 개별적인 인권협약도 체결하였다. 고문 방지와 처벌에 대한 미주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 1985)과 실종자에 대한 협약(1994)을 체

15) 세계 최초의 보편적인 국제인권선언으로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보다 6개월 전에 공포되었다.

결하기도 하였다.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59년에 설립되었다. 미주국가기구의 자율적 준사법적 전문조직으로서 총회에서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된 7명의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다. 인권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은 미주국가기구 헌장(1948), 인간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 선언(1948), 미주 인권협약(1969)에 근거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제기한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접수 조사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 국가의 인권정책을 조사, 감시, 보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Donnelly 2003, 141-143).

미주 인권위원회는 국민투표를 통과한 우루과이 사면법이 미주 인권협정을 위반하였다고 1992년 선언하였다(Servicio Paz y Justicia 1992, xxvi).

III.4. 신민주체제 인권정치

1) 신민주정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에서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정부-대통령, 의회, 법원-의 리더십이 결정적인 변수이다. 특히 집권세력-대통령과 여당-의 이념적 정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리정책의 방향,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정부교체에 따른 정치리더십의 변화는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정부 내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의회를 통하여 정리정책의 결정 또는 실행 과정을 주도하였다. 한편 법원의 독립적인 의지, 전문적인 능력, 헌법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기소 정리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에 기여하였다.¹⁶⁾

브라질은 신민주체제에서 5대 신민주정부를 경험하고 있고 집권세

16) 신민주정부의 인권유산 정리 정치와 정책에 대한 주요 참고 문헌과 자료: 양동훈(2007; 1997; 1996b), Kritz(1995), Skaar(2000), <http://www.freedomhouse.org>, <http://www.hrw.org>.

력은 3회 교체되면서 정치 이념적으로 중도우파에서 좌파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모두 인권유산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사르네이 정부(1985-1990)는 실종자 조사를 위하여 인권보호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가시적인 활동은 없었다. 오히려 군부체제의 여당지도자였던 사르네이(José Sarney) 대통령은 군부의 반발을 우려하였다. 까르도수 대통령은 2000년 군부에게 “독수리작전”(Operation Condor)에 대한 기밀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¹⁷⁾ 좌파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는 현재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의 인권유산 정리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¹⁸⁾ 이 상황에서 브라질 의회나 법원도 인권유산과 관련된 논의나 활동이 부재하다. 단지 브라질 제헌의회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정한 신민주헌법(1988)의 임시조항에서 1946년과 1988년 사이의 정치범을 사면하고 있으나 소급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다.

우루과이도 브라질과 같이 신민주체제에서 5대 신민주정부를 경험하고 있고 집권세력도 중도에서 보수, 좌파로 3회 교체되었다. 신민주정부는 “국가특정범죄처벌권 무효화법”(Ley de Caducidad, 무효화법)을 통하여 군부체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우루과이 시민 다수가 정부의 무효화법을 지지하였다. 이는 정부리더십의 변화에 관계없이 인권유산 정리정책의 변화를 제한하는 공식적인 걸림돌이 되었다. 군부체제의 최대 피해자인 좌파 연합정부도 근래 무효화법에 저촉하지 않은 범위에서 인권유산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군부의 지지를 받은 플로라도당(Colorados)의 상귀네띠(Julio María Sanguinetti Cairolo)가 집권하자 군부체제가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는 정치범을 사면하고 정치망명자의 귀환을 돕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

17) 독수리작전(Operación Condor)은 남미의 군부체제가 공동으로 반체제 정치인들을 납치, 암살하는 작전이었다.

18) 브라질의 좌파 룰라 정부는 2003년 국가인권활동가보호조정기구(NCPHRD)를 시민단체 지도자들과 함께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고문방지 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개정(2004)을 통하여 인권범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였다.

히 군부체제의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고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민족화해법을 공포하였다. 한편 의회는 실종자조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반면에 군부의 반대와 압력에 유의하여 꼴로라도당과 국민당 의원의 과반수 지지로 1986년 무효화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사후에 군인이나 경찰이 정치적 이유나 업무수행 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권을 포기한다.”, “행정부는 법원에 제소된 모든 증발자에 대한 주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송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법원도 1988년 무효화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꼴로라도당의 바트리에(Jorge Luis Batlle Ibánéz) 정부는 2000년 주요 시민지도자와 인권활동가를 중심으로 평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목적은 군부체제에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서 실종된 164명의 행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신민주체제의 전임 대통령, 꼴로라도당의 상귀네피와 국민당 라카이에(Luis Lacalle)는 바트리에 정부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을 반대하였다. 그 정리정책이 무효화법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

좌파 광역전선연맹(Broad Front Coalition)의 바스게스(Tabaré Vázquez Rosa) 정부는 무효화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건-해외망명자들의 사망과 실종-에 관련된 민간과 군인 관리들을 기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바스게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 일어났던 망명 정치지도자 살해사건은 무효화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2005년에 군부체제 대통령(Juan María Bordaberry)과 외무장관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와 달리 아르헨티나 신민주정부는 초기에 진실규명과 기소정책을 통하여 군부체제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수가 없었다. 신민주정부의 포괄적인 기소정책에 불만을 갖은 일부 군장교들이 무장반란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교체되면서 과거 정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군부지도자와 장교들이 대

19) [http://www. freedomhouse. org/ Freedom in the World - Uruguay\(2002\).](http://www.freedomhouse.org/Freedom%20in%20the%20World%20-%20Uruguay(2002).)

폭 사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 교체된 신민주정부는 인권유산 정리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다시 기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급진시민연맹의 “혁신과 변화” 계파의 지도자 알폰신(Raúl Alfonsín) 대통령은 국가실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8,960명의 실종자와 그 행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진실과 정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화해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위원회의 조사는 인권탄압 희생자 친족이나 생존자, 일부 가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에 기초하였다. 위원회의 인권보고서(“Nunca Más”)는 실종자의 신원과 행방, 그들에 대한 고문 실태와 함께 인권침해 관련자 1,300명의 군장교와 경찰의 신분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개인 관련자의 법적 책임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 그 판단은 법원의 몫이었다.

인권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군부체제(1976-1982)의 인권탄압에 관련된 군인사를 기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군부체제 지도자 9명이 기소되었다. 법원은 5명에게 최고 종신형에서 최저 4,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4명에게는 무죄 판결하였다. 특히 1976년에서 1979년 사이에 군사정부의 지도자였던 육군사령관 비델라(Jorge Videla)와 해군제독 마세라(Emillio Massera)는 조직적인 인권탄압의 책임자로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군지휘관들을 기소 처벌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군장교의 반대와 불만은 3회의 무장반란으로 나타났다. 알폰신정부는 타협적으로 기소종결(punto final)법과 복종의무면소(duo obedience)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기소될 장교를 수적으로 최소화하였다.

정의당의 메넴(Carlos Menem) 대통령(1989-2000)은 취임직후 과거 군부체제의 인권침해, 말비나스 전쟁, 군사반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280여명의 군인들을 사면하였다. 그들 중에는 “더러운 전쟁”(Dirty War)의 인권침해 관련자 39명의 군고위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57명의 좌익 테러리스트들도 함께 사면되었다. 그 후 인권침해 관련 군인사 12명이 추가로 사면되기도 하였다. 메넴은 법원이

수용자 자녀의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전직 군지도자를 구금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였다.

정의당의 좌파성향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대통령(2003-2007)은 메넴과 달리 인권유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인권침해 관련 전직 군인사의 국내 송환을 강제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약 15,000명의 사망과 실종자의 가족에게 각각 US\$220,000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그들의 21세 이하 자녀들에게는 월 US\$140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정치적 구금자와 강제 망명자들에게는 일시금으로 보상하고 실종자 자녀에게는 군면제, 주택 보조금의 혜택을 주었다(Heyner 2002, 330-331).

아르헨티나에서 메넴대통령은 사면을 통한 관용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외의 대통령과 의회, 법원은 일관되게 기본적으로 기소정책을 추구하였다. 신민주의회는 군부가 정권이양 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협약과 정책지침-인권침해 군관련자의 사면을 포함하는-을 폐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회는 1998년 기소종결법과 복종의무면소법 폐지를 결의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그 결의를 합법적이라고 2005년 선언하였다. 의회는 조모(grandmother)의 실종 어린이 수색과 구출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사보상기금”의 설립을 1998년 결의하기도 하였다.

근래 아르헨티나 법원은 특히 여성 수용자들의 자녀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군부체제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군사정부 대통령 비델라를 수용자 자녀들의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1998년 구금하였고 또한 194명의 어린이 실종과 관련하여 7명의 전임 군지도자들을 기소하였다. 메넴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속하여 과거 인권침해에 대하여 전직 군인과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2005년 말까지 거의 1000여명의 전직 군부, 경찰 요원들이 권위주의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칠레정부는 아르헨티나 신민주정부와 달리 피노체트와 군부의 실력과 영향력에 유의하였기 때문에 인권유산을 제한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다. 초기에는 인권유산 정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고 주로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서 정리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하였고 군부체제의 사면법을 무효화하고 기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당연맹(Coalition of Parties for Democracy)의 아일윈(Patricio Aylwin Azócar) 대통령(1990-1994)은 취임사에서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진실과 화해 조사 위원회(진화위)의 조직과 활동을 제가하였다. “진실에 근거해야만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국민화해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도 마련될 수가 있는 것이다”(The Chilean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 1993, 1).

아일윈은 진화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개혁과 인사뿐만 아니라 보수파 인사들도 위원에 임명하였다. 진화위의 주요 목적은 인권침해 행위 중에서 특히 실종과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만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1973년과 1990년 사이의 사망과 실종에 관련된 진정사건을 9개월 동안 조사하여 소위 “레티그보고서”(Rettig Report)를 작성하였다. 약 3,400건의 사망 실종사건 조사하였고 641개의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명백하게 군부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신원과 그 개인적 책임문제는 2016년이나 공개하기로 하고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사망, 실종의 사례에 국한하여 조사하고 체포, 구금, 고문, 추방 사례 등은 배제하였다.

진화위는 조사보고서를 범죄적 증거로서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대법원은 진화위가 밝힌 실종, 사망사건들-1978년 사면법이 적용된 사건을 포함하여-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것을 하위 법원에 지시하였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의 태도를 극적으로 바꾼 것이었다. 대법원은 그때까지 군부체제가 포고한 사면령(1978)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진화위는 사망, 실종자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정부는 국가보상화해공사를 설립하고 2,72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 4,886명에게 매년 약 5,000불 정도의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망자와 실종자 자녀들에게는 교육비 지원, 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Hayner 2002, 328-9). 이외에도 국가보상화해공사는 진화위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완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계속하여 조사하도록 위임되었다.

민주주의 정당연합의 프레이(Eduardo Frei Ruiz-Tagle) 정부(1994-2000)는 권위주의 인권탄압 유산 정리에 대한 노력을 제한적이지만 계속하였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1995년에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전직 군장성 2명을 칠레 외무장관과 비서 살해(1976)와 관련하여 실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다. 의회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법원 개혁법을 1997년 의결하였다. 대통령의 주도로 대화위원회를 군부대표 4명, 인권변호사 4명, 종교계 인사 10명으로 1998년 구성하고 조직하였다. 군부가 연행실종자의 신원과 행방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였다. 피노체트의 런던 체포(1998) 후에 40여명의 퇴임 군장교들이 살인, 납치, 고문 관련하여 구금되거나 기소되었다.

민주주의당(PPD)의 라고스(Ricardo Lagos Escobar) 정부(2000-2006)는 피노체트와 군부의 특권과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는 조건에서 과거 인권침해 정리를 보다 과감하게 진행하였다. 라고스 대통령은 군부체제에서 불법체포 및 구금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피해자였다. 의회는 헌법개정(2005)을 통하여 군부의 정치개입과 특권을 배제하였다. 법원은 군부체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양 받았다.

칠레 법원은 라고스 정부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에 부응하였다. 법원은 2000년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고 인권유린과 탈세혐의로 가택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법원은 2001년 고문, 납치, 학살 등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법원의 권한이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군부체제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사면법(1978)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2004년 피노체트는 “작전 콘도르”(Operation Condor) 시기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면책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라고스 대통령은 2003년 정치구금 및 고문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1973년과 1990년 사이에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은 인사들의 신원과 피해를 확인 조사하였다. 신민주체제에서 처음으로 구금 및 고문 피해조사가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2004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회복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가 인권기관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에게 종신연금을 주고 교육, 보건, 주택부문에서 지원과 우대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근 대다수 정당들은 고문 피해자에게 증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정치 구금 고문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라고스 대통령은 모든 증언을 50년 동안 대외비로 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법원도 대통령의 명령을 합법적으로 판결하였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중도좌파 민주연합연맹(Concertacion Coalition)의 바체레트(Verónica 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 군사면법(1978)을 명백하게 무효화하고 군부체제의 살해와 고문 관련자를 기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시민사회

인권유산 정리와 관련하여 브라질 시민사회의 지지와 압력은 천주교회의 인권활동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하다(Dassin 1986, xii). 반면에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시민사회는 인권유산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서 부각시켰고 그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기소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우루과이 국민 다수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신민주정부의 사면법에 동의함으로써 군부의 인권탄압 행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브라질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시민사회는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에 기여하였다. 브라질 천주교회는 군부체제의 정치자유화시기에 인권탄압 실태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상파울루(São Paulo) 천주교구의 신도 변호사들이 군사법정의 공식 기록-1964년과 79년 사이의 707건의 판결문-을 복사하

여 35명의 연구팀이 5년 동안 분석 조사하여 군부체제의 고문실태를 밝혀냈다. 그들은 민간정부 첫해에 고문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고문실태 조사는 군부체제의 군사법원이 기록한 공식문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천주교회의 인권보고서 공개는 1985년에 주요 사건이었고 인권보고서는 몇 주 동안 인기 도서목록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희생자 단체의 인권침해 조사 요구는 주목할 만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Dassin 1986, x-xii). 신민주헌법(1988) 제정과정에서도 주요 이슈로 논의되지 못 하였다. 단지 헌법 임시조항에서 1946년과 1988년 사이의 정치범을 사면하고 있으나 소급적 보상은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 시민사회는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인권유산 정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압력은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인권단체, “오월광장 어머니”(Madres de la Plaza de Mayo)는 특히 알폰신 정부가 군부의 무력적 압력에 굴복하여 타협적으로 기소종결법과 복종의무면소법을 선포하였을 때 정부를 비난하였다. 또한 메넴 대통령의 사면정책에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의회가 기소종결법과 복종의무면소법의 폐지를 1998년 의결하였을 때 아르헨티나 시민 80%가 그 결의를 지지하였다(Elin Skaar 2000, 13).

칠레 시민사회는 1987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의 군부체제를 중식시켰다. 1989년에는 민주적 헌법개정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1995년에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전직 군장성 2명을 칠레 외무장관과 비서 살해사건(1976)과 관련하여 실형을 최종적으로 선고하였을 때 시민 다수는 -여론조사에서 65.8%- 판결을 지지하였다(Elin Skaar, 2000 15). 반면에 우루과이 시민사회는 인권유산 정리문제에 대하여 분열되었다. 정부의 군사면법을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유권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헌법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유권자 25%-555,000명 이상-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국민투표위원회(Pro-Referendum Commission)가 최

종적으로 확증하였다. 그러나 국민투표(1989)에서 투표자 58%가 정부의 군사면법에 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반(反)사면세력이 패배하고 인권유산은 공식적으로 매장(burying)되었다.

신민주정부의 망각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시민사회는 진실 규명에 기여하였다. 특히 시민인권단체 “봉사 평화 정의”(SERPAJ)는 국민투표 직전 1989년 3월에 군부체제의 인권탄압 보고서(“Uruguay Nunca Más”)를 공표하였다. 일단의 변호사, 의사, 인권전문가들이 인권희생자의 개인적인 증언을 토대로 군부체제의 인권탄압 실태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인권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되었다. 정부의 지원도 없고 정부보관 관련 자료도 없는 조건에서 민간단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유권자 다수는 국민투표에서 의회가 의결한 국가특정범죄처벌권 무효화법을 지지하였다.

3) 군부

스미스(Smith 2005, 103)는 브라질과 칠레의 민군관계를 특성적으로 “조건적 군복종”(conditional military subordination)으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민간통제”(civilian control)로 평가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신민주체제에서 브라질과 칠레의 군부가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신민주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브라질 군부는 천주교회의 고문보고서 공개와 그에 대한 조사 요구와 압력에 반발하였다. 군부는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을 “애국적” 행위로서 정당화하고 관련자들을 옹호하였다. 그들의 입장과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브라질: 영원히”(Brasil: Sempre)을 출간하기도 하였다(양동훈 1996b, 183). 고문보고서와 고문자명단이 공개되었지만 관련자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군 또는 정부에서 근무하였다(Dassin 1986, xiii).

칠레 군부는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한 진실규명을 주장한 아일

원 대통령에게 군사면법(1978)의 폐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군부의 최고지도자 피노체트의 지도력이 점차 약화되는 과정에서 군은 정부의 인권유산 진실규명 노력에 제한적이거나 협력하기 시작하였다. 피노체트는 1998년 25년 만에 군총사령관에서 사임하였고 수술을 받기 위해 머물던 영국병원에서 1년 이상 구금되었다. 스페인 법원이 자국민의 인권피해와 관련하여 발부한 체포영장 때문이었다. 칠레 군부는 프레이 정부에서 대화위원회에 참가하고 6개월 동안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180명의 실종자 신원을 확인하였고 그 중 150여명이 바다나 호수, 연못에 투기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1,100여명의 실종자의 행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칠레 육군사령관은 2004년 칠레 역사상 처음으로 육군이 국가기관으로서 과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피노체트가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근래 권위주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35명의 전직 장군들이 기소되거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피노체트는 2006년 사망하였다.

<표 1> 권위주의체제 유산과 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

체제유형	권위주의체제						신민주체제			
	체제유형			인권탄압	정책성과	붕괴방법	체제수립(민주헌법)	체제지속(2006)	인권유산정리접근	인권유산정리정책
	수립년도	붕괴년도	지속기간							
브라질	군부/제도			저	고	변환	1988	18	보수적	은폐(침묵)
	1964	1984	20							
아르헨티나	군부/제도			고	저	대체	1983	23	개혁적	기소(사면)
	1976	1982	6							
칠레	군부/개인			중	고	변환	1987	17	개혁적	(진실)기소
	1973	1988	15							
우루과이	군부/제도			고	저	변위	1984	22	합의적	망각(투표)
	1973	1984	11							

* “인권탄압”은 군부체제의 실종, 사망자를 인구와 집권기간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대략 추산한 수준 -저(Low), 중(Middle), 고(High)-이다. “정책성과”는 군부체제의 경제적 정책성과의 상대적인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군부는 알폰신 대통령의 인권유산에 대한 진실규명과 기소 정리정책에 반발하였다. 특히 중견 장교들은 군지도자들의 명령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군부체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알폰신 정부에서 일부 장교는 세차레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군사반란을 기도하였다. 이에 알폰신은 타협적으로 기소정책을 대폭 완화하였다. 메넴도 군부의 불만과 저항을 우려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군부체제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대폭적인 사면정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 관련 일부 전직 군인사들의 고백(1995, 1998)은 사면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의회는 기소종결법과 복종의무면소법을 폐지하였고 법원은 군부체제의 여성 수용자 자녀 납치사건에 대하여 전직 군지도자를 구금 또는 기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었다.

한편 우루과이 군부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군부와 달리 효과적으로 인권유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였다. 군부체제 인권탄압의 민간 희생자들이 민사법원에 인권침해 관련 군인사를 고소하였다. 군부는 민사법원의 군인사에 대한 소환권과 재판권을 거부하였다. 군부는 법원이 그들의 과거 인권탄압 행위에 대하여 취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군부의 반대와 압력에 유의하여 우루과이 의회는 1986년 사면법-“국가특정범죄처벌권 무효화법”-을 의결하였다. 대법원도 1988년 그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좌파 바스게스 정부는 해외망명자들의 사망과 실종에 관련된 민간 관료와 군인사를 기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장교단체는 사면법을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²⁰⁾

IV. 결론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고도의 근대화과

20) [http://www. freedomhouse. org/Freedom in the world - Uruguay\(2002\) & \(2006\).](http://www.freedomhouse.org/Freedom%20in%20the%20world%20-%20Uruguay(2002)%20&%20(2006).)

정에서 예외 없이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군부권위주의체제-“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하였다. 군부체제는 신민주체제-“위임민주주의 체제”-에 부담스러운 인권유산을 남겼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은 다른 접근방법과 정책을 통하여 일단 정리되었거나 또는 정리되고 있다.

브라질 신민주정부는 보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은폐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우루과이 신민주정부는 합의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망각정책을 결정하였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개혁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기소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신민주정부는 인권유산에 대하여 진실규명이나 법적 처벌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단체가 군부체제 인권탄압의 진실을 조사하고 밝혔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는 인권유산에 대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실규명과 법적 처벌을 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신민주정부는 정부교체에 따라서 기소면제나 사면을 통하여 관용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소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칠레의 신민주정부는 초기에는 인권유산에 대한 진실규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의 인권유산 정리정책이 다른 이유는 군부체제, 민주화 이행과정, 국제인권체제, 그리고 신민주체제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군부체제의 인권탄압 강도와 경제적 정책성과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국제인권체제, 특히 국제지역적 인권선언과 관련 기구는 역내 특정 국가의 인권유산 정리의 구조적 조건으로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신민주체제에서 인권유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 압력도 신민주정부의 정리정책의 선택과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건들과 함께 정부와 군부의 세력균형 관계가 유산정리 정책의 선택과 변화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권유산 정리정책은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체제화-과거사 정리와 민주개혁-또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실현과 공고화에 다소의 영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의 보수적인 은폐정책은 민주주의 체제화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서 “반자유”(illiberal) 신민주체제의 정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루과이의 합의적 망각정책은 스페인의 경험과 같이 잠정적으로 민주주의 체제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공고화는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성찰을 전제로 한다. 망각정책보다는 기억정책이 요구된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개혁적 기소정책은 법치의 실천과 사법부의 독립성, 전문성, 이념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관행과 잔재,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신민주체제에서는 그러한 사법적 조건과 역량이 일반적으로 미흡하다. 진실규명을 통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추구하는 기소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군부, 정부와 사회, 정부 내의 3부에서 권위주의적 보수세력과 민주적 개혁세력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조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체제화와 공고화를 지체시킨다. 스미스(Smith 2005)는 근래 남미의 네 국가의 신민주체제를 거의 20여년의 체제지속성에도 불구하고 반자유 민주체제(illiberal democracy)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민주체제에서 권위주의 인권유산은 민주주의 체제화와 공고화를 지체 또는 정체시킨다. 인권유산이 개혁적 또는 합법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민주개혁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체제가 완성 심화되기 어렵다.²¹⁾

21) 최대유사체계(most-similar systems)의 소수 국가 비교에서 추론된 결론은 제한적이고 잠정적이다. 최대상이체계(most-dissimilar systems)의 소수 국가 비교와 관련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결론의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validity)을 검증할 수 있다.

Abstract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have been few serious discussions about some efforts by new democratic governments to settle human right violations in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and about their implications for democracy.

In new democracy, human rights legacies could be settled by the policy of forgetting, forgiving, prosecuting, or covering, which is respectively based on a consensual, reformist, and conservative, approach.

In settling human rights legacies, each approach and its policy may be primarily determined by (1) degre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olicy performance in the authoritarian regime, (2) processes of democratic transition, (3)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4) interests and relationships among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civil society in new democracy.

Whereas Brazil has been forced to adopt the conservative approach and the policy of covering, Uruguay has settled rights legacies by the policy of forgetting, based on the consensu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Argentina and Chile have basically pursued the policy of prosecuting through the reformist approach. Argentina's rights policy has been inconsistent, but Chile's rights policy has been gradual and consistent.

Such human rights approaches and policies have caused some political and social tension and conflict, and political instability in new democracy. As a result, they have delayed the processes of democratic regimization and consolidation. That's why new democracy may be still considered "illiberal", as Peter H. Smith argued in "Democracy in Latin America"(2005).

Key Words: Human Rights Legacy, Human Rights Policy, Human Rights Approach, New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 인권유산, 인권유산 정리정책, 인권유산 정리 접근방법, 신민주 체제, 민주주의 공고화

논문투고일자: 2007. 10. 08

심사완료일자: 2007. 11. 06

게재확정일자: 2007. 11. 14

참고문헌

- 양동훈(2007), 「권위주의 인권탄압의 유산정리와 민주주의: 신민주체제의 관점에서」, 미출간.
- 양동훈(1996a),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개념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 30, No. 1, pp. 135-150.
- 양동훈(1996b),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9, pp. 171-194.
- 이내영, 박은홍(2004),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한국, 필리핀, 태국의 비교 연구』, 아연출판사.
- Calvert, Peter(ed.)(1991), *Political and Economic Encyclopedia of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Essex, UK: Longman Group UK Limited.
- Cesarini, Paola(2004), “Legacies of Injustice in Italy and Argentina”, in Katherine Hite and Paola Cesarini(eds.), *Authoritarian Legaci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 159-190.
- Cesarini, Paola and Katherine Hite(2004), “Introducing the Concept of Authoritarian Legacies”, in Katherine Hite and Paola Cesarini(eds.), *Authoritarian Legaci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 1-24.
- Chilean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1993), *Report of the Chilean 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Philip E. Berryman trans.), Vol. 1,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assin, Joan(ed.)(1986), *Torture in Brazil: A Report by the Archdiocese of São Paulo*, New York: Vintage Books.
- Diamond, Larry(1999), “Is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Over?”, in Larry Diamond(ed.),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24-63.
- Donnelly, Jack(2003),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 Second Editio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ditorial Universitaria de Buenos Aires(1984), *Nunca Más: The Report of The Argentine National Commission on the Disappeared*,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 Forsberg, Tuomas(2003),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Dealing with the Past: Some Conceptual and Normative Issues”, in Nigel Biggar(ed.), *Burying the Past: Making Peace and Doing Justice After Civil Conflict*, Expanded and Update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aria Press, pp. 65-84.
- Haggard, Stephan and Robert R. Kaufman(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yner, Priscilla B.(2002), *Unspeakable Truths: Facing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New York: Routledge.
- Hite, Katherine and Leonardo Morlino(2004), “Problematizing the Links between Authoritarian Legacies and ‘Good’ Democracy”, in Katherine Hite and Paola Cesarini(eds.), *Authoritarian Legaci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and Southern Europ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p. 25-83.
- Huntington, Samuel(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1992),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in Latin America: 1992 Report*, Washington, D, C.: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ritz, Neil J.(ed.)(1995),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2: Country Studies,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Donnell, Guillermo(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5, No. 1, pp. 55-69.
- Pion-Berlin, David(1995), "To Prosecute or Pardon?: Human Rights Decisions in the Latin American Southern Cone", in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1: General Considerations,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pp. 82-103.
- Schedler, Andreas(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Vol. 9, No. 2, pp. 91-107.
- Servicio Paz y Justicia(1992), *Uruguay Nunca Más: Human Rights Violations, 1972-1985*(Elizabeth Hampsten tra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kaar, Elin(2000), "Judicial Reform and Changes in Human Rights Policies in Chile and Argentina",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Hyatt Regency Miami, March, pp. 16-18.
- Smith, Peter H(2005), *Democracy in Latin America: Political Chan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eitel, Ruti(1995), "How are the New Democracies of the Southern Cone Dealing with the Legacy of Past Human Rights Abuses?", in Neil J. Kritz(ed.),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1: General Considerations. Washington, D. 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 <http://www.freedomhouse.org/> Freedom in the World-Argentina, Brazil, Chile, Uruguay(2000-2007).
- <http://www.hrw.org/> Essential Background: Overview of human rights issues in Argentina, Brazil, Chile, Uruguay(2000-2007).